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4 발의연월일: 2020. 6. 23.

발 의 자: 박덕흠·홍준표·권성동

홍문표 • 이철규 • 최승재

정점식 · 김석기 · 김예지

김병욱 · 최춘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협력적·기업적 농업경영의 활성화를 통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업인 융자 시 등록면허세 감면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0년말로 종료될예정임.

그러나 농업법인 등에 대한 조세감면 축소는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져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및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를 위축시킬 것이 우려됨.

또한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지역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행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정책자금에 대한 출연금 등의 재원을 마련하여 정부정책 수행에 이바지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제상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농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 소득보전·농촌 경쟁력 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 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 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 나.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면제 및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1조제 1항, 제2항 및 제4항).
-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 라. 농수산물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 (안 제15조제1항).
- 마.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6 7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7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관련 감면 등) ①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	
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	
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	
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u>2020년 12월 31일</u> 까지 경	2024년 12월 31일
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	
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 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 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 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 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 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 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 감한다.

- 1. ~ 2. (생략)
-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③ (생략)
- 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u>2020년</u> 12

	<u>2</u> 024년 12월 31	일
1.	~ 2. (현행과 같음))
2		
		<u>2024년</u>
	12월 31일	.
3	(현행과 같음)	
4		
		<u>2024년 12</u>

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월 31일 ----.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 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 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 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 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 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 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 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 ---- 2024년 12월 31일 ----감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

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

촌계를 포함한다), 「산림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④·⑤ (생 략)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 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 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부

	<u>2</u>
024년 12월 31일	
①·⑤ (현행과 같음)	
Ð・① (2004 全日)	
IJ·⑸ (현행과 쇹듬) 레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	투공사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	등에
세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생략)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202 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 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로한다.

<u>2</u>
024년 12월 31일
② (현행과 같음)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u>202</u>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u>202</u>